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투쟁 계획
기자 간담회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 일시: 2023. 12. 04 (월) 오후 2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의 기본 전제

1)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으면 법 위반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없음

- 법에서 규정된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자체로는 처벌 규정이 없음.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
- 중소기업 사망사고 발생 확률 0.01% - 0.3% (산안공단 21년/ 2023.11.15. 국회 토론회 중기 중앙회 토론회) 으로 83만개 대상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0.3%
- 한국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한 재래형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0.3%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처벌을 강화하여. 전체 사업장이 원래 적용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율을 높이는 것임.

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법원 기각 결정

- 2023년 11월3일 창원지법 두성산업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 결정.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 되지 않음 인정.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
-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작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산안법이 수 백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 복잡하고 과다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과장하고 호도하는 것임.

3)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 운운은 어불성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 30건 내외, 재판 10건 미만인 상황에서 법의 효과 운운 자체가 어불성설임.
- 1호 사업장인 삼포도 재판 결과 나오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7건 8명 사망한 디엘 이앤시는 첫 번째 중대 재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2. 정부, 보수 양당 주장의 문제점

1)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 법 자체의 위헌 주장,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TF 발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실패한 노사자율안전정책으로 회귀, 단기 사망사고 감소 여부로 법의 실효성 논란 등 법의 무력화 지속 추진
- 대기업 중대재해는 노동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직장기소, 대검찰청 기준보다 낮은 검찰 구형과 법원의 낮은 선고 등으로 무력화 추진
- 11월3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기각으로 법의 모호성 주장이 동력을 잃자, 산재사망 기업 처벌의 문제를 <민생> 으로 둔갑시켜 개악 추진.
-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 연장에 2년 연장을 추가하여 5년 동안 법의 실종상태 추진
-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적용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 시키는 개악 추진임.

2) 노동부, 국민의 힘 주장의 문제점

(1)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 12,045명. 법을 위반하여 사람이 죽어 나간 기업 대표이사의 처벌 여부가 <민생> 으로 둔갑

-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5명, 이중 사고사망은 7,138명으로 사고 사망 전체 노동자의 76%에 달함 (산안공단 산업재해현황 분석). 최근 3년간 (2020년~2022년)은 전체 사고 사망의 80%.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최근 3년간 산재 사망 통계 /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현황분석]

년도	산재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전체	50인 미만
2022	2,233	1,372	874	707
2021	2,080	1,359	828	670
2020	2,062	1,303	882	714
총계	6,375	4,034	2,584	2,091
비율		63%		80%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년도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통합 재구성]

년도	산재 사망	사고 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 비율
2013-2022	19,860	9,380	7,138	76%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은 전년 대비 전체 노동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고 사망이 감소함.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악이 추진된 2022년은 전체 노동자(46명), 50인 미만 사업장 (37명) 모두 사고 사망 증가.

-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50건 이상이나 기소 30건 미만, 판결 10건 미만으로 법 집행 자체가 미미한 상황으로 집행 효과 거론 자체가 불가능. 법 시행 효과와 사고 사망 증감을 단기적, 즉자적 연계도 어불성설이며, <재해조사 대상 조사> 라는 적용 대상 기준도 불분명한 통계를 연계하는 방식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 매년 700명 이상이 사고 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이 아니라는 것임. 이는 윤석열 정부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정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이라는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2) 중소기업 정부 지원 대책 확대 강화는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 대상이 아님.

-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0년 4,198억에서 2023년 1조 1,987억으로 확대 집행하면서도, 대부분을 단기성, 일회성 지원 예산으로 집행. 민주노총이 근본 대책으로 제시한 <공동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제도 도입>은 2023년 시범사업 1건만 집행

- 노동부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진행했던 산업안전공단의 패트룰 점검사업은 2020년 77,085개에서 2023년에는 8월말 기준 27,914건으로 대폭 축소, 50인(억) 미만 사업장 현장 점검의 날 사업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

- 당정 협의회는 적용유예 연장을 추진하면서 정책, 예산, 기술지원 대책 추진 강화를 내세우고 있음. 법 적용유예 연장과 정부 지원 대책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거래 대상일 수 없으며, 법의 실질 적용과 병행 추진 되어야 적극적 참여 및 시행 효과를 강화 할 수 있음

3) 정부 지원대책은 2년 적용유예 연장으로 완성 되는 가?

○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확대. 대상 기업 1회 라도 하려면 20년 - 30년 소요

- 뒤늦게 시작한 안전 컨설팅은 기업에 1-2회 방문 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임. 현장에서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컨설팅 실시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직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데이터도 없음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 사설업체의 컨설팅을 신청해서 받아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노동부 11.20 국회 설명자료 중 현장의 목소리]

-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은 2022년 5,800개소, 2023년 1만6,000개소 실시됨. 컨설팅 인력의 한계로 1년에 컨설팅 실시 가능 사업장 숫자는 한정적임.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더라도, 50인(역) 미만 83만개 사업장에 컨설팅 1회라도 실시하려면 2023년 실시한 1만 6천개 기준으로는 50년이, 2024년 추진하겠다는 2만 6,500개소 실시 기준으로도 25년 이상이 소요됨.
- 50억 미만 건설 현장은 공사 기간도 짧고, 수개월마다 새로이 생기는 현장이며, 제조업도 매년 신설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어, 컨설팅 사업의 완료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재정도 인력도 불가능한 컨설팅 사업 확대를 적용유예의 근거로 제기하는 것은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주장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면 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요구도 낮아질 것임. 법을 적용하면서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고, 컨설팅이 실제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사업도 진행되어야 함

○ 안전관리 인력 지원금 대상 사업장 1,111개 사업장 2년 한시 지원?

- 법 제정 직후부터 민주노총은 “법 제정의 취지가 안전 경영 시스템 구축이니 그 취지에 맞는 근본 대책 수립 요구” 를 지속적으로 함. 그 하나는 <중소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제도 도입> 임.
- 민주노총의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 및 사업장당 안전보건관리 활동 시간 기준 등 공동안전관리자 관련 법 개정 ② 산업단지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공동안전보건관리자 배치하여 공공성 및 활동 관리등 법적 근거 마련 ③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시 정부의 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 법 개정 등

이었음.

- 그러나, 정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0년 4,198억에서 2023년 1조 1,987억으로 확대 집행하면서도, 예산의 대부분을 단기성, 일회성 지원 예산으로 집행.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제도는 2023년 시범사업 1건만 집행 됨.
- 12월3일 당정협의회 이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노동부는 2023년 11월20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국회 설명자료>에서 안전관리 인력 지원금 200억 순증,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136억 순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안전관리 인력 지원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한시로 월 150만원씩 인건비 지원으로 200억을 순증하겠다는 것임. 이를 환산하면 대상 사업장은 1,111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83만개 대상 사업장의 0.2%에도 못 미침. 더욱이 한시 지원이 끝나는 2년 뒤 지속 채용도 기대하기 어려움. 중기중앙회 8월 조사에서 적용유예 연장 시 안전관리 인력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5.4%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참여도 불투명함.
- 공동 안전관리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도 지역의 협회나 단체 등의 채용 시 인건비 지원 136억으로 대상 인원도 작고, 사업장 방문이나 점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법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인력 지원은 예산 집행의 실효성,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확대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해 왔고, 이에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

3) 더불어 민주당의 적용유예 연장 논의는 총선 앞둔 정치거래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도 모자라, 50인 미만 사업장 5년 적용유예?

-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로 반쪽짜리 법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법사위 심의 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소하지 않으면 법 개정하여 전면 적용” 으로 노동부, 중소기업 벤처부도 동의함.

- 더불어 민주당이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적용유예 연장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되었음. 이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저버리고 적용 시기 연장을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결정적 역할을 자임하는 것임

○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와 기업의 약속으로 적용유예 연장?

- 더불어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부의 사과, 중소기업의 법 집행 약속>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함.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으로만 매년 700명씩 죽어 나가는 현장의 현실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와 기업의 약속으로 개선할 수 없음
- 중대재해 발생 대기업에서 언론에 머리 숙이며 사과하고, 투자 약속을 발표해도, 실제 처벌되지 않으면 현장 개선은 이행되지 않고, 다시 중대재해 발생한 전례가 다수임.
-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에서 한시적 적용유예 시기가 다가올 때 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기업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다시 적용유예를 연장을 요구해 왔던 것이 경영계임.
-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와 기업의 약속으로 <민생>으로 둔갑한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의 총선용 거래에 불과함.

○ 정부의 근본 대책, 예산 및 재정 지원대책은 적용유예 연장 동의를 위한 정치적 요구

-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정부 근본 대책 및 예산 지원대책은 범위와 한계 제시가 없음. 급조하는 정부 대책과 예산 지원의 실효성도 검토할 방안이 없으며, 83만개 사업장의 준비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음.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적용유예 2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없음
- 정부의 근본대책, 예산 지원대책은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지원대책 이행이 정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 이를 적용유예 연장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3. 사업주 단체 조사의 문제점과 여론 호도

1) 같은 기관의 다른 조사 결과

○ 중기 중앙회

<중기 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 비교 >

구분	4월 조사	8월 조사
법 준비	법 준수 가능 59.2 % 전혀 불 가능 3.2 %	준비하지 못했다 80% 아무 준비 못했다 29.7%
적용 시기	법 준수 가능 제외 1년 연기 41.2%	유예 연장 필요하다 85.9% 연장 기간 질문 없음
	위험성 평가 연 1회 이상 실시 60.8%	- 준비하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 유예 연장 시 조치 계획: 안전 보건 담당인력 확충 등 5.4%, 안전담당 조직 신설 또는 확대 3.5%, 컨설팅 실시 13.7%
조사 대상	제조, 비제조 각 50% 수도권, 전국 각 50%	제조업 93%
응답자		대표이사 41% 임원 23%

- 동일한 조사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4월 조사에서는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다’가 59.2% 였고,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는 3.2%임. 그러나, 8월 조사에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 라는 응답이 29.7%이고, 상당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라는 응답 50.35%를 합산하여 80%가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통합 발표하고, 보수 언론이 집중 보도함.
- 법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도 중기 중앙회 4월 조사에서는 1년 유예가 41.2%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8월 조사에서는 시기는 제외하고 연기는 필요한가 라는 질문만 하여 85.9%의 응답 결과에 질문에는 없었던 2년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음.
- 4월 조사에서는 업종이나 수도권과 지역을 안배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8월 조사에서는 93.3%가 제조업이었고, 설문에 응한 대상도 대표이사가 41.5%, 임원이 23.7% 였음. 이는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기 위한 실태조사 설계가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대한상의 (인천)

구분	대한상의 인천	대한상의 인천
조사시기	2022. 10. 31. 127개사 대상 조사	2023. 11. 127개사 대상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기업 63% 안전보건 관리체계 일정 수준 구축. - 5인에서 49인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력 매우 부족 (17.3%), 다소 부족 (42.5%), 다소 충분 (34.6%), 매우 충분 (5.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조치를 취한 기업 24.4% -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82.7%

- 대한상의 인천의 경우 법 시행이 1년 3개월이 남은 시점인. 2022년 10월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0%에 달함.
- 그러나, 1년이 더 지난 2023년 11월 조사에서는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조치를 취한 기업이 24% 밖에 안 되고, 법 준수 여력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17.3%에 불과한데.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2.7%임.

2) 준비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VS 연장하면 인력확충 하겠다 5.4%

- 중기 중앙회 등의 2023년 8월 조사에서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적용유예 연장의 필요한 이유’도 안전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고 있음.
- 그러나. 법 적용이 유예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전보건 담당 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은 5.4%, ‘안전 전담 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는 3.5%만 답변. 컨설팅 실시를 위해 시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13.7%만 계획으로 응답. 적용유예가 연장되어도 근본 문제 해결로 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중기 중앙회 2023년 8월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2개)

구분	사례수 (명)	전문인력부족	예산 부족	의무이해 어려움	현장 근로자 비협조	기타
전체	(892)	35.4%	27.4%	22.8%	9.8%	4.6%

2-2)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되는 경우 조치 계획 (복수 응답 2개)

구분	사례수 (명)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전체	(892)	38.0%	14.6%	18.9%	13.7%

구분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	안전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	기타
전체	5.4%	3.5%	4.0%	1.8%

4. 노동부 실태조사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 20%

○ 자체 발주 조사 결과 발표 없이, 경영계 자료로 조사만 적용유예 연장수용 입장 제출

- 법 시행 10개월 전인 2023년 3월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안전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 사업장 실태조사 진행. 규모도 가장 많고, 사업장 규모, 재해율등 기준으로 설계. 실태조사 결과 법 시행 전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에서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20%, 보고서에는 도표만 있을 뿐 조사 결과 분석에 아예 언급이 없음.

① 중대법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알고 있다 ②들어보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전혀 모른다

② 아래 나열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들을 알고 계십니까?
 ①모두 알고 있다 ②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전혀 알지 못한다

중대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재해 예방방지대책 수립·이행	②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명령 이행
③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④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⑤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필자 마련·점검	⑥안전보건 예산편성·집행
⑦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⑧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의견에 따른 개선조치
⑧안전보건 인력 배치	⑨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의견에 따른 개선조치
⑩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마련·조치	⑩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⑪관계수급인 등의 평가기준·절차 등 마련·점검	
⑫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③ 귀사는 중대법 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습니까?
 ①이미 모두 갖추었다 (≒ ① 답변 시 ④로 이동)
 ②현재 준비 중이다 ③준비하지 않고 있다 (≒ ②-③ 답변 시 ⑤-1로 이동)

⑤-1 귀사는 내년 '24.1.27. 법 시행 전까지 위의 중대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 수 있습니까?
 ①그렇다 (≒ ④로 이동) ②그렇지 않다 (≒ ⑤-1-1로 이동)
 ⑤-1-1 중대법상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안전 담당 인력 부족 ②안전조치 요구 수준이 과도함 ③의무 항목이 너무 많음
 ④준비 기간이 부족함 ⑤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⑥관심이 없음
 ⑦기타 (이유 작성)

④ 위 안전보건 의무(⑤번 문항 하단 박스 내 13개 항목)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번호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⑤ 위 안전보건 의무(⑤번 문항 하단 박스 내 13개 항목) 중 귀사가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번호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⑥ 중소기업 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법의 적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①기술·법령 등 교육·컨설팅 ②재정지원 ③중대법 적용유예·제외 ④처벌수준 완화
 1순위: 2순위:

기타의견 (필요 조치 작성):

⑦ 중대법 위반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경우 귀사의 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①경영활동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이 있다. ②경영상 불편 등 일부 영향이 있다
 ③전혀 영향이 없다

⑧ 귀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 ⑤-1-3 답변) ②없다 (= ④ 답변)
 ⑨-1 산업재해가 있었다면 부상·질병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가능)
 ①경미한 부상·질병 재해 발생(기본 치료 수준) ②중대한 부상·질병 재해 발생(입원 치료 수준) ③사망사고 발생
 ⑨-2 산업재해 발생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중복가능)
 ①재해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 ②종사자 안전·보건교육
 ③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④안전·보건예산 증액 ⑤안전인력 배치 및 증원
 ⑥작업 전 종사자 대상 안전 유의 사항 주지 ⑦별도 조치 못함
 ⑨-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①설비고장 및 노후화 ②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③근로자 직업 전문성 미확보
 ④안전조치 어려움 및 부족 ⑤안전관리인력 부족 ⑥안전보건 투자재정 부족
 ⑦기타 (원인 작성 →)
 ⑩ 안전·보건 활동·관리업무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운영 (= ④-1 답변) ②미운영 (= ⑩-1 답변)
 ⑩-1 안전·보건 활동·관리업무 담당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특정 직원이 겸직 (명) ②전담자 지정 (명)
 ③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수행
 ⑪ 안전관리를 위해 구매한 물품이 있습니까? (중복가능)
 ① 없다. ②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등) ③ 안전보건표지
 ④ 안전벨트, 경보 등 방호장치 ⑤ AED 등 응급구호장치
 ⑥ 기타 (구매물품 작성 →)
 ⑫ 귀 사에서는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수행 (□정기적 / □비정기적) ②미수행
 ⑬ 귀 사는 종사자로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견을 청취하십니까?
 ①청취 (□정기적 / □비정기적) ②미청취
 ⑭ 귀 사에는 비상대피와 구호조치 관련 방법 또는 지침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⑮ 귀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까?
 ①보고 받는다 ②보고 받지 않는다
 ⑯ 귀하는 '위험성평가'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 ⑬-1 답변) ② 모른다(= ⑬-1 답변)

*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⑰-1 귀 사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수행 (□정기 수행 / □비정기 수행) ② 미수행 (□과거 수행 / □과거 미수행)

○ 법 시행 전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 81%. 체계 구축 가능하다 53%

- 2023년 3월로 법이 시행되기 약 10개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이미 모두 갖추었다. 22%, 현재 준비 중이라는 59%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함.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갖추었거나 준비 중인 50인 미만 기업이 81%에 달하는 것임.

-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체계>에 대한 질문을 함. 이에 대해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3%이고 어렵다는 응답은 47%였음.

- 도소매 서비스 보건업의 경우에는 이미 갖추었거나 법 시행 전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다 높게 나옴. 제조업은 10인 이상은 가능하다는 응답이 다 높게 나왔고, 9인 미만 경우에만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많음. 9인 미만 건설업의 경우에도 체계를 이미 구축했거나 가능하다는 응답이 불가능하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III-4] 시행('24.1.27)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가능 여부(업종/규모별)

		체계구축 가능 (3. 이미 갖추었다 + 3-1. 그렇다)	체계구축 불가능 (3-1. 그렇지 않다)
		제조	5-9인
	10-19인	76	56
	20-29인	53	32
	30-49인	54	24
건설	5-9인	235	269
	10-19인	74	93
	20-29인	27	15
	30-49인	22	14
도소매 서비스 보건	5-9인	21	7
	10-19인	17	4
	20-29인	8	2
	30-49인	5	1
기타	5-9인	20	21
	10-19인	13	5
	20-29인	5	2
	30-49인	5	1
무응답		8	
총계		696(53%)	606(47%)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2023 노동부 한국안전학회/설문조사 결과]

조사기간/ 기관	조사 대상	조사내용
2023. 3월 노동부 발주 한국 안전학회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사 (업종별, 규모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13개 의무 설문지 명기.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알고 있는가? - 모두 알고 있다 (18%) 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69%) 전혀 알지 못한다. 6% ○ 중대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이미 모두 갖추었다. 22% 현재 준비 중이다. 59%, 준비하지 않고 있다 18% ○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 수 있는가? 어렵다. 47% - 이미 갖추었거나, 내년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53% ○ 중대법 적용 이전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 재정지원 982개(36%) 컨설팅 689개, (25%) 적용유예 557개(20%), 처벌 수준 완화 442개 (16%)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 중 46%, ○ 안전보건 교육 수행 91%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다. 75%.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 의견 청취하고 있다. 89%. (정기적 의견 청취 38%) ○ 비상 대피 및 구호 조치 매뉴얼 있다. 58% ○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있다. 67%

○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안전 활동 보고받고 있다 75%.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 법 시행 10개월 전인 2023년 3월 조사임에 50인 미만 기업의 91%가 안전교육 실시,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음 75%, 종사자로부터 의견 청취 하고 있음이 89%에 달하고 있음.
- 중대재해 감축의 중요한 제도로 제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알고 있다 84%, 실시하고 있다 67%임. 교육, 종사자 의견 청취,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임.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서 법의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고, 처벌 수준 완화도 16%에 불과함.
- 재정지원 982개(36%) 컨설팅 689개, (25%) 적용유예 557개(20%), 처벌 수준 완화 442개(16%)로 응답하고 있어 법 적용을 전제로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1%에 달하고 있음. 연구보고서에서는 적용유예 연장이 낮다 라는 응답률에 대한 것보다,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만 강조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복수 응답)]

조치	재정지원	컨설팅	적용유예	처벌 수준 완화
개수	982	689	557	442
비율	36(%)	25(%)	20(%)	16(%)

○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수준이 낮고, 현재 법 시행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계나 보수 전문가, 보수 언론의 왜곡 과장에 휘둘려 적용 연기로 상당수 기업의 준비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버티면 된다> 라는 인식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임.

5. 적용유예 연장은 50인(억)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의 포기

1)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전체를 적용유예 하는 것

-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조치에 대해 규정함. 적용유예 연장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6개월에 1회 안전점검, 6개월에 1회 안전교육 실시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같은 기본 조치도 적용을 연기하는 것임.
- 정부, 지자체에서 점검 결과 내린 시정명령 이행조차도 적용 연기되는 것으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되는 현실을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이며, 기본 조치 이행도, 정부 점검, 감독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중대재해 예방대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

○ 제2의 메탄올 실명 청년 노동자, 화재 참사 9명 세일전자

- 2016년 인천 부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 실명. 2016년 1월 발생 확인 이후 노동부에서 메탄올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 점검 진행. 한 달 뒤 인천의 한 사업장에 노동부 감독관 점검 시 메탄올 사용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노동자 실명 발생. 의사에게도 메탄올 사용을 부인.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실명하게 됨.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4년이 걸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메탄올 사용 중지와 같은 노동부의 각종 시정조치나 명령이 형해화 되고, 제2, 제3의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실명으로 귀결될 것임.
- 2019년 인천 남동공단의 세일전자에서 화재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세일전자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남. 세일전자는 2016년 화재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보험금을 부풀려 총 6억7천만원을 가로챈. 2019년 당시 세일전자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2개월 전 소방시설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됨. 그러나, 법원은 소방 및 전기시설 관리에 직접 연관이 없다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재해가 발생해도 재발방지 대책 없이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했던 제2, 제3의 세일전자도 처벌하지 못함.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2. 전담 조직을 둘 것 (50인/억 미만 해당 없음)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할 것 4.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재해예방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유해 위험 요인 개선) 5.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 줄 것,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부분 적용) 6. 산안법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활동시간 보장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담당자만 해당 됨) 7.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8.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점검 (작업중지등 대응조치,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단독 기업일 경우 적용 안 됨. 하도급인 경우가 많음)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의무 이행되지 않은 사실 확인되면 인력이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의무 이행 필요한 조치 할 것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 실시 교육에 대해서 이행의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할 것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		
제15조 징벌적 손해배상		

2) 50인(억)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불 가능한가?

-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들어 적용 연기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전담 조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활동 시간 보장의 경우도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적용됨. 도급, 용역 시의 기준 마련도 하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주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음.

[법 4조 1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및 방안]

내용	적용 여부 및 방안
경영방침 설정	- 기본 사항, 가훈, 교훈과 같이 사훈을 두면 가능함.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 50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없음
유해위험요인 점검	- 형식 제한 없음. 위험성 평가 하면 같음 - 5월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 간단 체크리스트법 가능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하한액 기준 없음. (예방예산 편성은 기본사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권한과 예산, 업무수행 평가	- 관리 감독자, 20억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일부 적용 . 업무 수행 평가는 근무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정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원은 적용 대상 아님. - 안전보건 담당자 20인 이상 제조업 등 일부 적용(전문인력, 전담 인력 아님) -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실시 중임.
종사자 의견 수렴 (산보위, 도급사업 협의체로 같음)	- 산보위 등 적용 대상 아님. 도급사업 협의체 적용되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원청으로 도급 주는 비율 낮음. - 종사자 의견수렴 형식 규정 없고, 조건에 따라 운영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 정부, 업종별 표준 있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동
하도급 안전, 공기 등 기준	- 원 도급인 경우 적용. 대부분 단독 사업장이거나 하청

-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은 50인(억) 미만은 적용되지 않음. 노동부는 이미 안전관리자 등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종사자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실시 중임.
-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2023년 5월 고시가 개정되어 작은 사업

장은 <체크리스트 방식>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나 양식을 대 폭 완화했으며, 업종별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나 중소기업용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음.

-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규정된 조치이거나, 기본 조치여서 적용유예 연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수 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임.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가 의견>

[정혜선/카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부터 준비할 시간을 2년을 더 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업주가 얼마나 예방하느냐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2년 유예해도 마찬가지 - 2023년 11월25일 스트레이트 방송 보도]

[이명구/울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 부소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준수사항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고, 그 이외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2023년 11월15일 국회 토론회 토론문]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연구원장]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넘게 발생한다. 가장 위험도가 큰 작업장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감독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도 2년을 더 유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법 준수 의지가 없는 기업이 2년 뒤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지 보장할 수도 없다. 정치권은 전면적 시행유예 시도로 혼선을 초래하기 보다 기업이 법 준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도와야 한다. - 2023년 9월25일 한겨레 왜나면 기고

[한기운 / 사]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그 동안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들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해 조직과 인력보강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경제단체는 법 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대두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기대효과를 도외시한 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따른 부작용만을 앞세워 법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3년의 시간을 준 만큼 본격 법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 보다는 제도의 운영을 통한 명과 암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023년 11월23일 중부일보 기고

3)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사업장 규모 따른 적용유예 없음

- 국내 법령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하한형을 두고, 처벌 양형도 높은 법안도 도입 초기부터 차등 적용은 없음. 환경범죄 단속법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법령 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은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어떠한 차등 적용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령도 징역형에 사업장 규모 차등은 없음

4) 현장의 쪼개기 계약,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확대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 사업장이 나 원청이 50인 미만이면서, 수 백명의 노동자를 특수고용으로 고용한다면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됨.

- 최근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로 그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배달 노동이 대표적인 사례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무제공자의 중대재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속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 사업주에게 일부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음. 50인(억) 미만 사업장 법 적용유예가 연장되면 날로 증가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임.

5) 50인 미만 사업장 산안법으로 처벌 가능 ?

○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2배 이상,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 / 출처 범죄분석 (대 검찰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21 산업안전공단]

년도	계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2017	7,285	5,278	482	1,525	471	300	246	153	96	78	52	24	105
2018	7,442	5,734	359	1,349	355	307	205	154	90	66	37	21	114
2019	8,923	7,118	385	1,420	367	305	211	162	93	74	52	32	124
계	23,650	18,130	1,226	4,294	1,193	912	662	473	284	224	148	85	352
비율	100	76	5	18	5	3.8	2.7	2	1.2	0.9	0.6	0.3	1.4

- 그러나, 2021년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까지도 동일한 기준으로 초범에 대한 재범 비율은 97%로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76%로 2016년 대비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함. 3년간 4범도 473명 이고, 9범 이상도 352명에 달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가 일반 형법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임.

○ 사회적 지탄과 양형기준 조정에도 여전한 산안법 솜방망이 처벌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2명 실형, 평균 벌금 488만원

-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이사 처벌 상대적으로 높아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
- 솜방망이 처벌은 재범, 3범, 9범으로 반복적 중대재해 발생으로 귀결

<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 처벌 선고형 >

처벌 선고형 유형	2018	2019	2020	2021
징역(금고)	0	3	2	0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	5	43	39	1
징역, 집행유예, 벌금	1	6	7	0
벌금	6	42	21	1
계	12	95	69	2

[2023년 50인 미만 기업 산안법 위반에 따른 규율현황 분석/ 한국 노동법학회]

6.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노동자 시민의 여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경제단체의 각종 조사에 따르면 안전투자는 확대되고, 안전 전담 인력도 증가하고 있음.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법 시행 100일 당시 조사에서는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설치가 45.2%였으나, 2023년에는 75.5%로 약 1년 6개월 동안 30%가 증가했고, 안전전담 인력을 둔 기업도 2배가 증가했고, 법을 이행하고 대응이 가능한 기업도 30%에서 61.3%로 2배가 증가함. 이는 법의 시행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안전투자와 인력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임.
-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의 관리자 및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법 시행 이후 기업 측면에서 높은 경각심을 환기시켜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의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작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선 안전조치 요구. 개선 후 작업 실시> 를 현장에 정착시키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작업 전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부여하고, 개선 요구를 많이 하는 하청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례도 있음.

발표 기관	주요 내용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담당 부서 설치 법 시행 100일 45.2%--> 2023년 75.5%로 증가 - 안전 전담 인력 둔 기업 31. 6%---> 66.9%로 2배 증가 - 법 이행 하고 대응 가능 기업 30%--> 61.3% 2배 증가
2023년5월 중기중앙회	<p><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후 안전관련 예산/ 인력 증가 50인 이상 사업장 50.4% 증가 - 전혀 그렇지 않다 8.0%
2023년1월 경총 172개사 조사	<p><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대비 안전보건 투자예산 확대 38.3%, 유지 56.9% 감축 4.8% - 기업의 95.2%가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변 - 투자 확대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를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3.2월 이동선 오태근 연구	<p><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현장 관리자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3곳. 각 30명씩 총 90명 조사. 절반 정도가 건설현장 경력이 10년 이상 - 안전시설물 훼손 시 위험을 느끼는가 노동자 중처벌 시행 전후 모두 90% 이상이 위험을 느낀다고 답변 관리자는 시행 전 63.3%, 시행 후 매우 그렇다 30%--> 76.7%로 대폭 상승 기업 측면에서 건설재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환기시켜 관리자들과의 안전의식 향상 의미
경향신문 2023 1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2021년 환경 안전분야에 5조원 넘는 투자 . 전 경련 2022 K-기업 ESG 백서 분석 - 2021년 100대 기업 환경 안전 투자 규모 2021년 약 5조 4,400억. 2020년의 2조 9,000억 대비 87.6%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
안전신문 2023. 5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1일 국토부 국내 22개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 대상 시행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 철도 사고는 2021년 64건에서 79건으로 증가. 안전투자 집행액 2021년 2조2,427억에서 2조6,947억으로 증가, 안전투자 예산 2021년 2조4,482억에서 2022년 2조 8,515억으로 확대 중대재해 처벌법 영향
현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전후로 노동자의 선제적 작업 거부권 기업 내 제도화 확산 : 삼성물산, 한국 시설공단 -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질 가동, 사측의 참여 활성화, -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 실질화 사업장 사례 확대

- 2022년 9월 국회의장실과 헤럴드 경제 조사에서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 53.9%, 완화해야 한다는 17.6%에 불과함.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 안전보건 전문가 612명 대상 조사에서는 현행 법 처벌이 부족하다가 47.4% 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는 77.1%,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에 81.4%가 찬성함.
- 2022년 10월 재단법인 경청의 의뢰로 한국 객럽이 중소기업 1,0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업 대상 조사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찬성이 80%였고, 찬성 이유로는 하청에 책임 떠넘기는 행위 방지가 가장 높았음.
- 2023년 노회찬 재단과 한국 비정규 센터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 81.5%로 동의하지 않는다 18.5% 보다 훨씬 높았으며,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도 75.2%가 동의함.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82.2% 였음. 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72.4%로 동의한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도 64.5%는 처벌 수준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7. 민주노총의 대응 투쟁 계획

1) 기간의 대응

- 6월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검찰 규탄 및 업정집행 촉구 서명운동 전개 : 2주일 동안 2만여명의 서명. 대검찰청 서명지 전달
- 7월 105개 시민사회 단체 참여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발족. 전국 지역에서 캠페인, 선전전 진행
- 10월16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 서명운동 전개. 1개월 동안 6만여명 서명 참여, 11월 30일 기자회견 전달.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은 불참

2) 민주노총 투쟁 계획

○ 전국 동시다발 민주당사 항의행동, 기자회견 진행 :

- 11월30일- 12월 5일 주간 진행
-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민사회 연대 진행.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지역 운동본부

- 생명안전 행동 참여 단위 부문별 입장 발표 및 의견서 전달
 - 12월 4일부터 2주간 집중 진행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앞 집회 /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행진 및 규탄

- 국회 앞 농성 돌입
 - 국회 앞은 12월 5일 농성 돌입 - 국회 회기 마무리 까지 (내년 1월 전망)
 - 국회 안 밖의 투쟁 병행 전개 :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시 혹은 보수 양당 논의 돌입 시

- 매주 수요일 노조법 거부권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도심 선전전
- 주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항의행동. 기자회견
- 법사위 논의 돌입 시 국회의원 대상 항의행동.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항의 행동 전개